

「WTO체제하의 축산물수입관리제도 발전방향」

정부는 국내축산업의 진흥을 위하여서 1994년 6월에 발표된 농어촌발전대책에서 제시된 바에 따라 축산정책 및 그 개혁과제를 발전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1995년 1월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농산물의 시장개방에 따라서 외국산 농축물의 수입실적이 1995년에만도 100억 달러를 상회하여서 우리나라 국제 수지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국내의 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서 WTO농축물협약이 허용하고 주요선진국이 활용하고 있는 보조금조치를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구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외국산 저질 또는 덤핑 축산물에 대하여서 이를 합규범적인 테두리내에서 그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 주제상 합규범적인 수입관리방안에 관하여서만 논급하고자 한다.

1. 축산물 수입제도의 발전방안(돼지고기의 경우)

돼지고기의 효율적인 수입관리방안으로써는 돼지고기의 공매물량중에서 일정비율을 당해분기의 평균 낙찰가격 혹은 공매내정가격으로 생산자단체와 돈육수출업체에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한다. 나머지물량에 대한 공매방식은 공매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최고납입금 제시업체부터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복수최고가격공매경매」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매내정가격의 산정시에는 국내의 수급상황과 가격추이를 고려하고 부위별, 용도별 공매내정가격을 차등화하되, 국내 생산자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업체별 최대 수입량한도는 가급적 크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업체별 배정량을 제한하지 않으면 축산발전기금으로 사용될 공매납입금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

문이다. 하나의 업체가 많은 물량을 확보하게 될 경우에는 국내가격체계를 왜곡시킬 것으로 우려할 수도 있으나, 전체 시장접근물량의 크기가 국내수요량과 비교할 때 미미할 뿐만 아니라 수입업체는 저장비용과 금융비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가격의 단기적 변동추이에 따라 판매량을 결정하는 수동적인 가격피결정자의 입장을 견지할 것이므로 독과점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쿼터 배정량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수출국의 이의제기 및 통상압력의 소지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국내산과 수입육의 차별화를 위하여 수입육은 수입육 전문판매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수입육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가공원료육으로 용도가 지정된 물량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여 가공원료육을 시장에 유통시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시켜야만 한다.

또한, 수입업자는 수입관리기관에 월별 수입량, 판매량 혹은 사용량, 재고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동 의무사항 불이행시에는 수입권 공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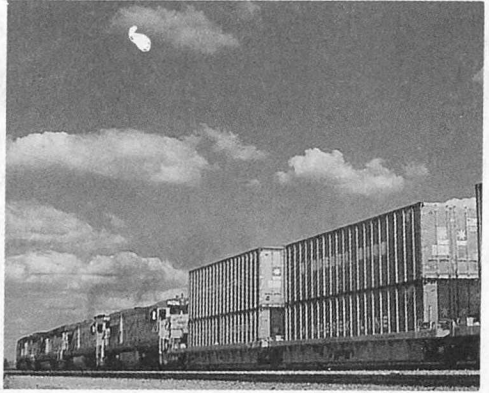


신 유 권

(WTO분쟁조정위원)

낙찰을 무효화시키고 향후 공매참여가격을 박탈해야 한다. 수입확인업무는 수입추천기관이 담당케 함으로써 수입관리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제고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축산물에 대한 관세율체계 개편



현행 한국의 관세율수준은 8%를 중심세율로 하여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더구나 실행관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1996년 현행 공산품은 6.2%, 농산물은 16.6%의 수준에 있으며, 종합 실행관세율은 1995년에 6.5%, 1994년에 7.9%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선진국적」인 수준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① 관세율체계가 산업정책적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관세의 인하는 억제되어야만 한다.

② (농)축산물에 대하여서는 수입관리정책 및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일정수준의 가공도별 관세율격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③ 그리고 현행 관세율 체계상 나타나는 역관세현상(예 : 통조림 육류 등의 식품 원료 대 완제식품에 대한 관세율)은 이에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감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 경쟁국인 중국이나 동남아국가 등으로부터의 저가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서는 (농)축산물에 대한 종량세를 도입하여 관세관리 및 통관행정상 재량의 여지를 넓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⑤ WTO농산물협약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SSG) 부과대상품목을 현행의 61개 품목에서 이를 늘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통관행정상 수입 면허전 관세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일수출국으로 부터의 동일품목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수시로 비교하여 과세가격이 저평가(under-value) 신고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지만 농산물 특별긴급관세제도의 실효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다.

한편, 축산물에 대한 조정관세제도는 통상마찰의 소지가 존재하는 바, 중장기적으로는 긴급수입제한조치(SG)로서의 긴급관세제도나 반덤핑 관세제도로의 발전적 전환을 추구하여야만 할 것이다. 또한 할부관세제도의 운용방향으로는 대상품목의 수를 축소하고 공산품에 대하여서는 그 운용기간도 단축하여 관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되, 물가안정과 관세수입의 확보라는 목표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 수입가격의 하락 등으로 할당 관세의 적용요건에 부적합한 품목은 제외시켜야 하며 ② 반면에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축산물 등 생활필수품 관련품목중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관세감액을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국제가격이 하락하고 물자의 수급상 애로가 없는 품목 및 할당관세의 적용요건과 관계가 없이 특정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에 대하여서는 할당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3.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역기준 및 동조치의 강화

「WTO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약」(SPM)이 1995년 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각국의 수입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역제도는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동등성원칙의 인정, 위험평가제도, 명료성의 확보, 수입금지지역의 축소 등 과학적 근거주의에 입거한 위생 및 검역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위생 및 검역에 대한 인식부족, 제도미비, 제반시설 및 장비 부족, 전문인력의 부족, 위생 및 검역 관련 정보부족 및 국제화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서 국민건강 및 국내 동·식물 보호수준의 저위가 우려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정책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즉, ① 국민모두의 수입축산물에 대한 위생 및 검역조치에 대한 인식전환의 노력, ② 관련법령 및 제도의 정비, ③ 위험평가제도의 적극적인 도입 및 대응조치의 모색, ④ 전문적인 연구·검사 인력의 선발 및 육성, ⑤ 위생·검역 기술의 제고 및 검역조치의 효율성, 명료성의 확보, ⑥ 수입축산물에 대한 수출국 현지에서의 검역상태 검토·분석을 위한 「현지조사제도」의 도입, ⑦ 위생 및 검역관련 기관간의 업무협조체제구축, ⑧ 시대의 변화에 맞는 위생 및 검역조치의 강구, ⑨ 위생 및 검역관련 정부예산의 증액 및 그 효율적인 사용, ⑩ 사전적인 규제기관으로서의 「식품·의약품 관리청」의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4.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및 표시제도의 강화

농림수산부는 1996년 1월 1일부터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어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겠다. 즉, 농림수산부는 참기름, 라면, 고추장, 소시지, 과일주스 등 수입원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큰 54개 농수산물 가공식품과 국산둔갑 우려가 높은 우리밀, 한우고기, 나주배 등 1백 64개 국산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1996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1996년에 원산지표시제 대상품목으로 신규지정된 가공식품은 포장용기와 포장재에 어떤 원료를 어느나라에서 수입했는지, 어떤 원료를 어떤 비율로 혼합했는지 등을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국산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산된 시·군의 이름을 명기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지역에서 조금씩 생산되기 때문에 수집 유통되는 약재와 잡곡, 가공과정에서 섞일 수밖에 없는 축산물, 군·관·학교 급식용 등으로 시·군 단위의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산」으로만 표시할 수도 있게하고 있다.

아무튼 근자에 값싼 외국산 축산물이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 없이 수입된 저가 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수입통관단계 원산지표시가 불분명하다든지 또는 통관후 원산지표시의 제거, 변조를 통하여 국산품으로 오인시키는 등

소비자오인 우려 축산물에 대하여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 또한 위반업체에 대하여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수입 화물 선별검사대상에 포함시켜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반입후에도 시장단속을 통하여 추적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5. 수입 축산물로 인한 국내축산업에 대한 산업피해구제

외국산 축산물의 수입가격이 수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인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 되어 국내축산업이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받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 덤핑제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경제원이나 무역위원회는 축산업체로부터 덤핑제소를 접수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하며, 축산업계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간접적으로 각종의 행정지원을 제공할 태세가 되어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긴급수입제한 조치 즉,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요청시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1993년 무역위원회가 배합사료인 러시아산 소성인산 석회품목에 대한 덤핑제소에 대하여 산업피해가 경미하다하여 이를 덤핑 무혐의로 처리한 것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1996년 상반기 현재 무역위원회는 역시 배합사료의 원료인 염화코린 품목에 대하여 덤핑의 존재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6. 축산물 밀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강화는 철통을 부요하는 사안이라 할 것이다.

7. 수입축산물에 대한 제조물 책임법제(products liability)의 도입추진과 함께 리콜(결함시정)제도의 시행도 예정대로 금년 10월부터는 꼭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즉,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축산가공식품들이 변질되거나 위해(damage)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이를 수거하는 식품회수제도는 국내산 또는 수입식품의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시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 방안이 되는 것이다.

8. 결론

위에서는 「개방농정」하에서의 축산물수입관리제도의 발전방향을 고찰하여 보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각기 단편적 그리고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성격의 사항들이 아니고, 동시에 그리고 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축산농가 및 정부당국의 가일층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WTO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약」(SPM)이 1995년 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각국의 수입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역제도는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동등성원칙의 인정, 위험평가제도, 명료성의 확보, 수입금지지역의 축소 등 과학적 근거주의에 입거한 위생 및 검역조치가 요구되고 있다.